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41
----------	-------

발의연월일 : 2026. 7. 8.

발 의 자 : 정춘생·박은정·황운하  
김재원·서왕진·김선민  
강경숙·염태영·이해민  
김준형·차규근·이기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등의 행위 역시 처벌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를 통해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게 하고 피해자의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

를 허위사실로 훼손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8조 및 제9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폭행을 당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5.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6.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④ 이 법에서 “유가족”이란 5·18민주화운동관련자의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4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8조의 제목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5

· 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정보통신망의”를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⑦ 제2항의 죄는 피해자(피해자인 5·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가족)이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4항의 죄는 피해자(피해자인 5·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가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징벌적 손해배상) ①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범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범죄로 인한 손해의 규모 및 정도
2.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범죄를 범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범죄에서의 표현의 내용, 정도, 기간  
· 횡수 또는 전과범위
4.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5.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범죄에서의 표현의 내용과 관련한 유죄의 확정판결(행위자 외의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을 포함한다)이 이미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였는지 여부
6.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범죄를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의2(정의) ①·②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1조의2(정의)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이 법에서 “5·18민주화운 동관련자”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u></p> <p><u>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 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u></p> <p><u>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 여 폭행을 당하거나 상이(傷 痍)를 입은 사람</u></p> <p><u>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 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 람</u></p> <p><u>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 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u></p> <p><u>5.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 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u></p> <p><u>6.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u></p>

<신 설>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3. (생략)

<신 설>

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④ 이 법에서 “유가족”이란 5·18민주화운동관련자의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4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① -----  
-----  
-----  
--7년-----  
-----.

1. -----  
-----  
-----  
-----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

2.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5·18민주화운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  
-----.

⑦ 제2항의 죄는 피해자(피해자인 5·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가족)이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4항의 죄는 피해자(피해자인 5·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가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징벌적 손해배상) ①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범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1.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범죄로 인한 손해의 규모 및 정도

2.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범죄를 범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범죄에서의 표현의 내용,  
정도, 기간·횟수 또는 전과  
범위

4.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5.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범죄에서의 표현의 내용  
과 관련한 유죄의 확정판결  
(행위자 외의 사람에 대한 확  
정판결을 포함한다)이 이미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였는지 여부

6.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범죄를 전후하여 피해자  
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  
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  
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  
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  
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  
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  
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  
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  
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  
으로 정할 수 있다.